

【 5 】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1. 2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개정이유

- '91년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된 후 수차에 걸쳐 동법령이 개정되어 동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설치 근거를 의료보호법 제9조로 하던 것을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 하여 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의료보호기금 지출내용에 있어 일부용어를 정리함.(안 제6조)
-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있어 대불금 금액에 따른 상환방법을 10만 원미만의 경우 4회로 하던 것을 3회로 하는등 현행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리 또는 삭제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운영조례”를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제9조”를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로하고 “보호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하며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진료비 부담액”을 삽입한다.

제7조제1항중 “경과한 월의 말일”을 “경과한 달의 말일”로하고, 동항제1호중 “4회”를 “3회”로, 동항 제2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동항제3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하며, 동조제2항중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지 6월내”를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로하고,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징수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중 조명 “결손처분”을 “대불금의 결손처분”으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며, 동조제2호중 “시효가 소멸된 때”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동조“제3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u>운용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보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u> ----- <u>의료보호대상자</u> ----- ----- ----- ----- <u>운용</u> ----- -----.
제6조(지출) ① (생 략)	제6조(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입)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② ----- <u>진료비부담액</u> ----- ----- -----.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 ----- <u>경과한 달</u> ----- <u>의 말일</u> ----- -----.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이상 <u>20만원</u> 미만은 8회 3. <u>20만원</u> 이상은 12회	1. ----- <u>3회</u> ----- 2. ----- <u>30만원</u> ----- 3. <u>30만원</u> -----

현 행	개 정 안
②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② ----- -----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 ----- ----- -----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 ----- -----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 2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의 2 (대불금의 결손처분) ----- ----- < 삭 제 > ----- 1. ----- 2.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 삭 제 > 4. < 삭 제 > ----- 5. < 삭 제 > 6. < 삭 제 > 7.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1. 보호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 신설 >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1977. 1. 1.
조례 제 478호]

개정 1979. 4. 3. 조례 제 624호
 개정 1979. 5. 24. 조례 제 634호
 개정 1982. 4. 17. 조례 제 819호
 개정 1984. 2. 1. 조례 제 955호
 개정 1985. 12. 31. 조례 제 1099호
 개정 1988. 3. 16. 조례 제 1187호
 개정 1995. 6. 9. 조례 제 1533호
 개정 1996. 9. 23. 조례 제 1582호
 개정 1998. 10. 14. 조례 제 1684호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비의 부담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 3 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 출납원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일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 5 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7편 사회복지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
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
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
금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준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
의 1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두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납
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수한다.

제7조의 2(결손처분) 준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
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브고로서 갈을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제8편 사회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부 칙 (1977. 1. 1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3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24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4.17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1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2.31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16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의료보장계상이 일용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995. 6. 9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9. 23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17條 (督促等) ①代拂金償還義務者가 代拂金을 納付期限까지 償還하지 아니한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지체없이 督促狀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期間내에 代拂金을 償還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醫療保護를 정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拂金의 督促을 받고도 償還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 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18條 (代拂金의 缺損處分)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償還 받지 못한 代拂金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1. 保護對象者の 行方을 알 수 없게 된 때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
3. 代拂金償還義務者의 經濟的 事情으로 인하여 代拂金償還이 불가능한 때(邑·面·洞長의 확인과 당해 市·郡·區 醫療保護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保護機關이 缺損處分을 決定한 때에 한한다)

第19條 (不當利得의 徵收) ①保護機關은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醫療保護를 받은 者 또는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護基準을 초과하여 保護費用을 받은 醫療保護診療機關에 대하여 그 保護費用에 상당한 금액 또는 醫療保護基準을 초과하여 받은 保護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醫療保護診療機關과 醫療保護를 받고자 하는 者의 共謀에 의하여 醫療保護가 행하여진 때에는 保護機關은 그 醫療保護診療機關에 대하여 醫療保護를 받은 者와 連帶하여 第1項의 不當利得金額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第20條 (損害賠償請求權의 代位) 保護機關은 第三者的 行위로 인하여 醫療保護를 한 때에는 保護費用의 범위안에서 그 保護對象者の 第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하여 保護對象者를 代位한다.

第21條 (醫療保護基金) ①이 法에 의한 保護費用의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市·道에 醫療保護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基金은 國庫補助金,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 당해 基金의 決算上 剩餘金과 기타 収入金으로 造成한다.

③基金은 別途計定을 設定하여 管理하여야 하며, 保護費用,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委託時에 필요한 費用, 기타 醫療保護事業에 직접 소요되는 費用으로 사용하거나 償還을 조건으로 保護費用을 代拂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第38編 社會福祉 第3章 生活保護 醫療保護法

아니된다.

④市·道知事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號의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

1. 金融機關 또는 郵信官署에의 預入

2. 國·公債의 買入

⑤基金의 管理·運用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5·8·4>

第22條 (消滅時效) ①保護費用 및 代拂金에 관한 債權은 2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②代拂金의 償還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徵收金에 대한 納入의 告知는 民法第17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時效中斷의 效力を 갖는다.

第23條 (보고 및 檢查) ①保健福祉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基金의 管理·運用 및 醫療保護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市·道와 市·郡·區에 대하여 指導·監督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②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保護診療機關에 대하여 診療·藥劑의 支給등 醫療保護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檢查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③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保護를 받는 者에 대하여 당해 醫療保護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質問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查 또는 質問을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4條 (醫療保護診療機關의 指定取消등) ①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保護診療機關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5·8·4>

1. 醫療保護診療機關에 종사하는 者가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護基準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호하였거나 診療費를 請求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경우

②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保護診療機關에 종사하는 者가 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月이상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免許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改正 95·8·4>

第38編 社會福祉 第3章 生活保護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성병감염자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비 청구영세서는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디스켓·마그네틱테이프등을 말한다) 또는 전자문서의 교환방식에 의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의료보호비용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97·9·1)

제24조 (보호의 제한사유 통보등) ①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중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는 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의한다.

②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관에 통보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법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①보호대상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④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7·9·1>

제26조 (보증금의 징수금지등)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보증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2종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퇴원시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1

第38編 社會福祉 第3章 生活保護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주일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3·12·31>

제27조 (영수증의 교부)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보호기관이 부담하는 의료보호비용의 명세와 본인이 부당하는 의료보호비용의 명세를 구분하여 총 의료보호비용을 기록한 영수증을 보호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97·9·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보호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7·9·1>

1.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중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청구명세서 심사수수료 및 대상자자격관리 위탁수수료 소요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수용비 및 수수료(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비목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또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第38編 社會福祉 第3章 生活保護 의료보호법시행규칙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또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⑧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①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9.1>

② 시·도지사는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9.1>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30조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후 재지정금지기간의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다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보호진료기관지정 취소시 보호대상자의 진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정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1의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97.9.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지정취소개시일 2주전까지 해당 의료보호진료기관 및 소속 병·의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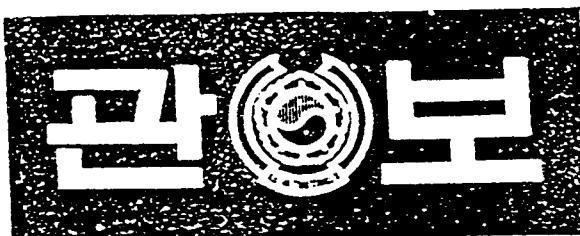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지정취소 기간중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에는 이를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9.1>

⑤ 지정취소일부터 5년이내에 다시 부당하게 의료보호를 하였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재지정금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정부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발	기 관 보 장



제11939호 1991. 10. 10. (목)

부 령

- 보건사회부령 제233호(의료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령) 3

인 사

- 인사발령 24

고 시

- 채무부고시 제91-19호(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16호 및 동시에 그 제20조) 25

- 전파연구소고시 제278호(전자파장해검정합격) 26

공 고

- 과학기술처 공고 제91-142호(기술용역업 등록) 26

- 과학기술처 공고 제91-143호(기술용역업 등록 사항추가) 27

- 문화부 공고 제111호(법인 설립허가) 27

- 문화부 공고 제112호(선본도준영정지정) 27

- 부산지방환경청 공고 제91-28호(방지시설설계등록) 27

- 경기도지방환경청 공고 제12호(관인조각사용) 27

- 중앙해난심판원 공고 제91-76호(재결사항) 28

-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공고 제52호(해기사면허증 등록) 28

- 광대구우체국 공고 제5호·제6호(관인조각사용) 28

- 천주교 해국공고 제2호(관인조각사용) 28

입찰공고

- 조달청 내자공고 제91-239호·제91-240호(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29

(이면 계속)

회									
총	1	2	3	4	5	6	7	8	9

발행 총무처 편집 ☎ 720-4331 모금 ☎ 754-4332

1991.4.A. 1991.12.18. 주간
190×265 mm 32 pp. 54 g/m²

1991. 10. 10. (목요일)

관

보

제11939호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3. 기타 제1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없는 진료
③ 제3차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진료
2. 제1차진료기관에서 이송된 특수진료를 요하는 환자의 진료(제3차진료기관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한한다)
3. 당해 제3차진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제19조 (입원진료의 결정 및 회송) ① 제2차진료기관은 제3차진료기관의 장은 의료보호신청을 받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이송 받은 때에는 진찰한 후 입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2차진료기관은 제3차진료기관의 장은 이송받은 환자를 진찰한 결과 입원진료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제1차진료기관 또는 제2차진료기관에 진료 달당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회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소견서의 유효기간)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7일간으로 한다.

제21조 (진료기간) ①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행할 때에는 의료보호증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그 환자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을 초과하였는지 의 여부를 관찰하고, 보호기간을 초과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보호기관으로부터 보호기간 연장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차진료기관은 제2차진료기관의 장은 일원기간이 30일(정신질환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호기관으로부터 일원기간 연장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원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의료보호설의위원회의 실의를 거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자체없이 이를 당해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원기간연장승인신청 및 승인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의료보호기간에 포함된다.

제22조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교부) ① 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다음 각호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부·초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의료법에서 정한 기간
2. 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 사본,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또는 이를 증명할 서류, 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입 증거서류와 수불대장증은 보호비용의 청구일부터 2년
3. 기타 의료보호에 관한 서류는 의료보호가 끝난 날부터 2년

②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동일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진료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승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선촬영필름을 복사하여 고부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보호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의료보호비용의 청구등) ①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월별로 의료보호를 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찰하는 보호기관(성별·갈색·자위경우에는 당해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보호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기관에 제출한 의료보호비용청구서의 사본 1부를 영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료보호비용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보호의 재한시유 통보등) ① 법 제12조 제1호의 규정중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는 관찰의 진료상 필요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로 의한다.

②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영 제19조 제1항과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관에 통보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법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의료보호비용의 대률 및 상환방법) ①

국 1959 호

관

보

1959. 10. 10. (목요일)

· 호대상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④ 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능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⑤ 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보증금의 징수금지 등) ①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보증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직원시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1주일 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27조 (영수증의 교부)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은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보호기관이 부담하는 의료보호비용의 명세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호비용의 명세를 구분하여 총 의료보호비용을 기록한 영수증을 보호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군·구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보호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보증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증금을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물어야 한다.

1. 보증금을 통장외의 송금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갈등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충돌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린회계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청구경세서 실사수수로 및 대상자자격관리 위원수수로 소모비용을 적상화해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모되는 비용으로 수량·일용량금·국내여비·수용비 및 수수료(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행정경비는 당해 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또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또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배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⑧ 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과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의료보호기금의 운용결과 및 결산보고)

① 시·도지사는 본기별로 의료보호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본기 종료 후 1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그중 제3·3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체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30조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최소후 재지정금지 기간의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최소한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다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아니된다.

②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91년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된 후 수차에 걸쳐 동법령이 개정되어 동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제명중 “운영조례”를 “운용조례”로 하고 “양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설 치 근거를 의료보호법 제9조로 하던것을 동법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8조로 하여 그 근 거규정을 명확히 함(안제1조)

나. 의료보호기금 지출내용에 있어 일부용어를 정리 함(안 제6조)

다.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있어 대불금 금액에 따른 상환방법을 10만원 미만의 경우 4회로 하던 것을 3회로 하는 등 현행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리 또는 삭제함(안제7조 및 제7조의2)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 법령 발췌서

○ 의료보호법 제21조(의료보호기금), 제17조(독촉), 제1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제28조(의료보호기금의 관리운용)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사전예고 : '98. 12. 7 ~ '98. 12. 26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음.